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615 호

제출년월일 : 2021년 6월 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50퍼센트로 함.(안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나. 양천구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함.(안 제29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 제13조의3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22. ~ 2021. 5. 1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2조제8항”을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거나”를 “제13조의2제3항 및”으로,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와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대부료”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1.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기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 보다”를 “연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로, “경우,”를 “경우 감액조정률은”으로, “감액조정률은 100분”을 “100분”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 ① 공유재산 대부료는 영 제32조에서 정한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2조제9항** ----------.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때의 대부료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제13조의2제3항 및**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와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대부료 또는 사용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 설>	**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 설>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1.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현 행	개 정 안
	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연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 **경우 감액조정률은** ---------- **100분**----------.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할 때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제32조(대부료의 납부) ① 공유재산 대부료는 영 제32조에서 정한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

현 행	개 정 안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 제 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다.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가.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다.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삭 제>**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생 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 ---------- ---------- ---------- ----------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4. (생 략)

④ ~ ⑤ (생 략)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

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

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생 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 ⑧ (생 략)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⑩ ~ ⑫ (생 략)